

신축주택등 현황 (2013년 4월 1일 현재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① 사업주체등	상 호		사업자등록번호	
② 사업계획 승인권자			③ 사업계획 승인일	
④ 공사 시공자	상 호 사업자등록번호		⑤ 입주자 모집공고일 (입주자 계약일)	
⑥ 사업위치				
⑦ 사업계획	대지면적(㎡)	건축연면적(㎡)	주택형태	규 모 동 세대
⑧ 준공 여부	[] 준공 [] 미준공		준공(예정)일 · 취득일	
⑨ 신축주택등 구분	☐ 「주택법」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☐ 「주택법」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☐ 주택건설사업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☐ 「주택법」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☐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☐ 신탁업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☐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공급하는 오피스텔			
⑩ 사업내용	연면적(공동주택은 전용면적)		공 급 세 대 수(호)	
	㎡			
	㎡			
	㎡			
	㎡			
	㎡			
	㎡			
	합 계			
⑪ 신축주택등 현황	연면적(공동주택은 전용면적)		세 대 수(호)	
	㎡			
	㎡			
	㎡			
	㎡			
	㎡			
	㎡			
	합 계			

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에는 사업주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2013.4.1. 현재
의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적습니다.

1. ①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. 다만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에 해당하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, 주택의 시공사,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, 신탁업자를 적습니다.
2. ⑧란에는 해당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준공 또는 미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이면 준공일을, 미준공이면 준공 예정일을 적습니다. 다만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에 해당하면 사업주체 등으로 부터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.
3. ⑪란의 「신축주택등 현황」에 대한 상세내용을 별지 제63호의13서식(2)의 「신축주택 동·호수별 현황」 및 별지 제63호의13서식(3)의 「미분양주택 동·호수별 현황」 서식에 적습니다.

신축주택 동·호수별 현황
(년 월 일 현재)

[illegible]

미분양주택 동·호수별 현황
(년 월 일 현재)

[illegible]